## [별표 3] 직접경비 청구 기준 <개정 2023. 6. 1.>

1. 인증심사원에 대한 직접경비는 「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」별 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
기준점	구분	청구 기준(정액)			
		교통비	숙박비	일비	식비
광화문을 공통기준으로 정함 ※ 도로원표(도로법 시행령 제50조 2항)	근무지 내	-	-	20,000원	-
	근무지 외	왕복 KTX 기준	55,000원	25,000원	25,000원

- ※ 심사수행기관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(도로원표)을 공통 기준으로 정함
- 2. 구분의 <u>근무지 내</u>는 서울특별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3. 인증심사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인 경우, 한국인터넷진흥원「출장규칙」을 따른다.